

일상감사 현황 [2018년 4분기]

가. 일상감사 대상업무 [상근감사위원 직무규정 제4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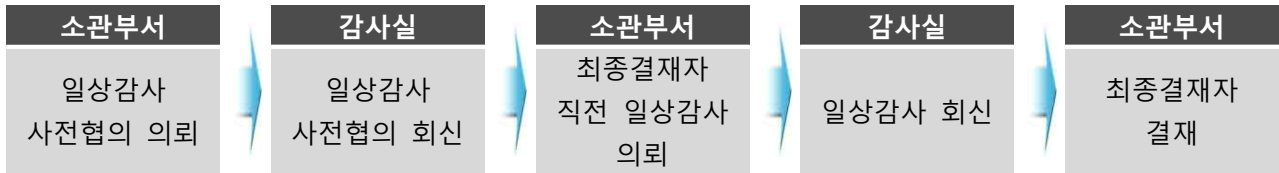
□ 중요사항(상근감사위원 결재)

1. 사규 및 법령에 관한 사항
 - 가. 규정 및 이사회규정 별표에 의한 중요규정 관련 세칙, 지침의 제·개정 사항. 다만 개폐정리 및 별지서식의 제·개정은 제외한다.
 - 나. 법령의 개정건의 및 법령개정·폐지에 관한 의견 제출
2. 이사회(상임이사회 포함) 의결 및 보고사항. 다만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
 - 가. 주주총회의 소집
 - 나.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지정
 - 다. 영업부서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라. 전차 이사회 개최결과 보고
3. 내부평가기준(임원 포함)의 설정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조직, 인사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
 - 가. 조직(임시조직 포함) 개폐, 정원 조정, 직무등급 결정
 - 나. 채용 및 인사(승진, 전보 등) 기준 및 계획
 - 다. 포상(사장표창계획 및 대외표창상신) 및 징계
 - 라. 급여 및 복리후생 지급 기준
 - 마. 국내·외 학위과정 운영계획
 - 바. 직원의 겸직 승인
 - 사.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의결사항
5. 회계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
 - 가. 결산(반기결산 포함) 및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
 - 나. 투자유가증권의 인수 및 처분
 - 다. 연간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
 - 라.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관한 사항
6. 주택도시기금에 관한 사항
 - 가. 위수탁계약 및 협약의 체결·변경·해지
 - 나. 기금투자심의위원회 및 도시재생투자심의위원회 의결사항
7. 신상품, 신사업 및 해외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 - 가. 신규사업 진출 및 신상품 개발 방안의 수립
 - 나. 해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
 - 다. 해외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변경
8.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예산을 수반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
9. 기타 상근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□ 일반사항(감사실장 결재)

10. 사장 결재를 득하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. 다만 중요사항은 제외한다.
11. 사규관리규정에 의한 세칙, 지침 및 예규의 제·개정 사항(별지서식 포함). 다만 중요사항은 제외한다.
12. 본부장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. 다만, 하자소송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.
13. 자산의 관리·처분에 관한 사항
 - 가. 부동산의 매입과 처분
 - 나. 취득가액 건당 1천만 원 이상 고정자산의 손·망실 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다. 잔존가액 건당 1백만 원 이상 고정자산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사항
14.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 - 가. 1천만 원 이상의 경비예산의 지출원인행위
 - 나. 3천만 원 이상의 자본예산의 지출원인행위
 - 다.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지출원인행위
 - 라.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.
 - 인건비 등 정기적 경상비 지출에 관한 사항
 - 여비교통비 지출에 관한 사항
 - 세금공과금 및 법정경비에 관한 사항
 - 임차주택 대여 및 주택구입·임차자금 대여에 관한 사항
 - 일상감사를 받은 계획에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
15.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
 - 가. 입찰에 의한 계약 중 8천만원 이상의 공사,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·구매, 용역계약체결을 위한 계약 상대방 선정에 관한 사항
 - 나.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계약 상대방 선정에 관한 사항
 - 다. 당초 일상감사를 받은 계약체결의 주요내용 변경 및 당초 계약과 불리한 조건으로 재계약 하는 사항
 - 라. 주택도시기금업무를 제외한 위·수탁계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지
16. 이사회(상임이사회) 의결사항을 제외한 심사위원회 의결사항
17. 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
 - 가. 위원회, 협의회, 자문기구 등의 신설 또는 폐지
 - 나. 리스크관리위원회, 보안심사위원회, 개인정보심의위원회, 정보공개심의회, 등급조정위원회 의결사항
18. 예산에 관한 사항
 - 가. 예산 편성 관련 안건심사소위원회 심의안건
 - 나. 예산의 항 또는 목간 전용
 - 다. 예산 편성 및 집행지침의 수립 및 변경
19. 본부장 이상의 결재를 득하는 채무감면 등에 관한 사항. 다만 중요사항은 제외한다.
 - 가. 구상권 행사의 유예, 채무감면 및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
 - 나. 유입물건의 매각
 - 다. 워크아웃업체·회생업체·출자회사(출자전환주식 보유 회사)에 관한 사항
20. 본부장 이상 결재를 득하는 보증이행사업장 등에 관한 사항
 - 가. 보증이행사업장 예비비 집행 승인에 관한 사항
 - 나. 미분양주택, 미분양임대주택, 환급이행사업장의 처분에 관한 사항
 - 다. 환급이행사업장의 공사 후 매각 승인

나. 일상감사 처리절차



* 일상감사 사전협의는 임의절차임

다. 일상감사 처리현황 [2018년 4분기]

실시건수	의견제시건수	의견제시율	의견반영건수	의견반영율
193건	20건	10.36%	20건	100%